
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7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7. 10.

발 의 자 : 이종배 · 이정문 · 김소희
박형수 · 김용태 · 유상범
김성원 · 안호영 · 김정재
김한규 · 정태호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.

현행법에 따르면, ‘입찰시장 관리기관’, ‘수소안전전담기관’의 경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“전력거래 관련”, “안전 관련” 기관·단체·법인일 것을 지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, ‘수소유통전담기관’의 경우 그 지정 요건을 “수소사업 관련” 기관·단체·법인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.

‘수소사업’이란 “수소의 생산·판매 또는 수소 관련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”과 관련한 사업으로서, “수소사업 관련 기관·단체·법인”에 해당하는 기관의 범위가 제한되어 업무에 적합한 기관·단체·법인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의견

이 제시됨.

이에 현행법상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업무의 특성에 관한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적합한 기관·단체·법인이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소경제의 체계적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34조).

법률 제 호
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소사업”을 “수소사업 또는 에너지 수급·유통 관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(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수소사업</u> 관련 기관·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유통전담기관(이하 “유통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	제34조(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수소사업 또는 에너지</u> <u>수급·유통 관리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